

1. 의결주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무원 채용 시 신체검사 관련 준용규정 추가하고, 폐지 또는 개편된 영어능력 검정시험 점수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군무원 채용 업무추진 간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4의2의 토플(TOEFL), 텡스(TEPS)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시험의 종류		기준점수		
		5급	7급	9급
토 플 (TOEFL)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IBT 71점 이상	IBT 54점 이상	IBT 41점 이상
텡스 (TEPS)	서울대학교 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340점 이상	268점 이상	211점 이상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신체검사) ① (생략) ② 제1항의 신체검사에 관하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신체검사) ① (생략) ② -----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4조 및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을 준용한다.